물질안전보건자료
(Material Safety Data Sheet)

S-OIL SB S 32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가. 제품명: S-OIL SB S 32
나. 화학식(분자량) 및 조성 : 탄화수소의 혼합물
다. 제품의 용도 및 사용상의 제한:
 1) 용도 : 무첨가 기계유
 2) 사용제한 : 자료없음
라. 제조 및 공급회사 : 에쓰-오일토탈에너지스윤활유㈜ (전화번호 : 02) 6320-2000)
마.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칠패로 37, HSBC빌딩 16층
바. 작성부서 : 기술개발팀
사. 담당부서 : HSEQ팀
아. 긴급연락번호 : 02) 6320-2000

2. 위험.유해성

가. 위험·유해성 분류 및 구분:

화학물질의 분류	유해. 위험성 구분
유해하지 않음	0

Distillates (petroleum), hydrotreated heavy paraffinic (수소처리된 중질 파라핀 정제유(석유))	NFPA 지수 : 보건=1, 화재=1, 반응성=0

나. 예방조치문구를 포함한 경고 표지 항목

구 분		표 시
그림문자		그림문자 없음
신호어		신호어 없음
유해·위험문구		- 물리,화학적 위험 : 위험물질로 분류되지 않음 - 건강 유해성 : 유해위험물질로 분류되지 않음 - 환경 유해성 : 환경적 유해위험물질로 분류되지 않음
예방조치 문구	예방	- 특별한 예방조치문구 없음
	대응	- 특별한 예방조치문구 없음
	저장	- 특별한 예방조치문구 없음
	폐기	- 특별한 예방조치문구 없음

다. 유해·위험성 분류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유해·위험성 : 자료없음.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가.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화학물질명	이명	CAS 번호	함유량, %
Distillates (petroleum), hydrotreated heavy paraffinic (수소처리된 중질 파라핀 정제유(석유))	없음	64742-54-7	100

나. 참조 사항
-본 제품에 사용된 광유계 기유는 IP346 법에 따라 측정되는 DMSO 추출물이 3% 미만입니다.

4. 응급조치 요령

가. 눈에 들어갔을 때 : 다량의 물이나 생리식염수로 15분 이상 씻고 즉시 의학적 조치를 취할 것.
나. 피부에 접촉했을 때 : 영향받은 부위를 비누 또는 순한 세제와 다량의 물로 씻을 것.
다. 흡입했을 때 : 신선한 곳으로 옮기고 보온에 힘쓴다.
호흡이 중지되었을 때는 즉시 인공호흡을 실시하고 의사의 처치를 받는다.
라. 먹었을 때 : 구토를 강요하지 말고, 증상에 따라서 부양적으로 치료하고 의학적 조치를 취할 것.
마. 급성 및 지연성의 가장 중요한 증상/영향 : 자료없음.
바. 응급조치 및 의사의 주의사항 : 특별한 해독제 없음. 증상에 따라 폐증치료.

5. 폭발·화재시 대처방법

가. 적절한 소화제 : 분말 소화약제, 이산화탄소, 포말, 물분무.
나. 사용해서는 안되는 소화제 : 옥내·외 소화전.
다. 소화방법 및 장비 : 용기를 화재지역으로부터 제거하고 용기의 측면에 냉각수를 뿌릴 것.
라. 화학물질로부터 생기는 특정 유해성 :
○열분해 생성물: 탄소 화합물.
○화재 및 폭발위험: 경미한 화재 위험이 있음.
마. 화재 진압 시 착용할 보호구 및 예방조치 :
위험없이 할 수 있다면 용기를 화재지역으로부터 이동시키시오
누출된 물질에 고압 물줄기를 뿌려 비산되지 않도록 하시오
추후 처리를 위한 제방을 축조하시오
주변화재에 적응한 소화제를 사용하시오
물질 자체 또는 연소생성물을 흡입하지 마시오
바람을 안고 저지대로 피하시오
화재 진압시 화학물질의 흡입 및 접촉을 피하기 위해 보호 장비(즉, 호흡기 장비, 화학보호의, 장갑, 신발,고글, 마스크 등)를 착용하여야 한다.

6. 누출 사고 시 대처방법

가.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및 보호구 : 점화원의 제거, 충분한 환기, 호흡용 보호구
위험없이 조치할 수 있다면 누출을 중단시키시오
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 폐기를 위해 용기에 보관할 것.
모래 또는 비가연성 물질을 사용하여 흡수시키시오
다. 정화 또는 제거방법 : 모래나 기타 흡수제를 사용하여 흡수시킨 후 폐기할 것.

7. 취급 및 저장방법

가. 안전취급 요령 : 흡연, 불, 불꽃의 사용을 금지할 것.
나. 안전한 저장 방법 : 밀봉할 것. 서늘하고 건조한 장소에 저장할 것. 통풍이 잘 되는 장소에 저장할 것.
기타 관련 법규의 규정을 준수할 것.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가 노출기준:
○ 국내기준: 해당없음
○ 기타기준: 광유 미스트 - USA: OSHA (PEL) TWA 5 mg/m^3, NIOSH (REL) TWA 5 mg/m^3, STEL 10 mg/m^3
ACGIH (TLV) TWA 5 mg/m^3 (고도로 정제됨)
○ 생물학적 노출기준: 자료없음
나. 적절한 공학적 관리 :
국소배기, 공정밀폐 환기장치를 설치하시오
해당 노출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시오
다. 개인 보호구 :
1) 호흡기 보호 : 정상 사용 환경하에서는 특별한 보호조치가 필요 없으나 먼지 발생 가능성이 높은 환경하에서 사용할 경우 산소마스크와 같은 적절한 호흡기구를 착용, 유기물 정화장치를 갖춘 전면 부착용 호흡기구를 착용
2) 눈보호 : GOGGLE, 안면대.
3) 손보호 : 안전장갑.
4) 신체보호 : 보호의.

9. 물리화학적 특성

가. 외관 : 노란색 액체.
나. 냄새 : 탄화수소 냄새.
다. 냄새역치 : 자료없음.
라. pH : 해당없음.
마. 녹는점 : 해당없음.
바. 끓는점 : 해당없음.
사. 인화점 : 214 ℃ (COC)
아. 증발 속도 : 자료 없음.
자. 인화성(고체, 기체) : 해당없음.
차. 폭발한계 : 0.9 ~ 7.0%
카. 증기압 : 자료없음.
타. 증기밀도 : 자료없음.
파. 밀도 : 861.5 kg/m^3, 15℃
하. 용해도 : 녹지 않음.
거. n-옥탄올/물 분배계수 : 측정치 없음.
너. 자연발화 온도 : 자료없음.
더. 분해 온도 : 자료없음.
러. 점도 : 30.05 cSt at 40℃
머. 분자량 : 자료없음.

10. 안정성 및 반응성

가. 화학적 안정성 : 상온 및 상압에서 안정함.
나. 반응시 유해물질 발생가능성 : 상온 상압에서 반응 없음.
다. 피해야 할 조건 및 물질 : 열, 불꽃, 강산화제.
라. 분해시 생성되는 유해물질 : CO, CO2, 탄소산화물.

11. 독성에 관한 정보

가. 가능성이 높은 노출 경로에 관한 정보
 1) 호흡기를 통한 흡입: 중대한 부작용에 대한 정보는 없음.
 2) 입을 통한 섭취: 설사
 3) 피부접촉 : 자극, 피부장애
 4) 눈접촉 : 자극
나. 물리적, 화학적 및 독성학적 특성에 관련된 증상 : 자료 없음.
다. 단기 및 장기 노출에 의한 지연, 급성 영향 및 만성영향
 1) 급성 독성 물질 : 자료없음.
 2)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 물질 : 자료없음.
 3) 심한 눈 손상 또는 자극성 물질 : 자료없음.
 4) 호흡기 과민성 물질 : 자료없음.
 5) 피부 과민성 물질 : 자료없음.
 6) 발암성 물질 : 해당없음.
 7)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 : 자료없음.
 8) 생식독성 물질 : 자료없음.
 9) 표적장기·전신독성 물질(1회 노출) : 자료없음.
 10) 표적장기·전신독성 물질(반복 노출) : 자료없음.
 11) 흡인 유해성 물질 : 자료없음.
라. 독성의 수치적 척도(급성 독성 추정치 등) : 자료 없음.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가. 생태독성 : 자료 없음.
나. 잔류성 및 분해성 : 자료 없음.
다. 생물 농축성 : 자료 없음.
라. 토양이동성 : 자료 없음.
마. 기타 유해 영향 : 자료 없음.

13. 폐기시 주의사항

가. 폐기방법 : 폐기물 관리법에 명시된 경우 규정에 따라 내용물 용기를 폐기하시오.
나. 폐기시 주의사항 : 폐기물 관리법에 명시된 경우 규정에 명시된 주의사항을 고려하시오.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가. 유엔 번호 : 해당없음.
나. 유엔 적정 선적명 : 해당없음.
다. 운송에서의 위험성 등급 : 해당없음.
라. 용기등급 : 해당없음.
마. 해양오염물질 : 해당없음.
바. 사용자가 운송 또는 운송수단에 관련해 알 필요가 있거나 필요한 특별한 안전대책 : 자료없음.

15. 법적 규제현황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 해당없음.
나. 화학물질관리법 등 타 부처의 화학물질관리 관련법에 의한 규제 : 해당없음.
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 제4류 제4석유류.
라.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 지정폐기물 (폐유, 06-01-03)
마.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 자료없음.

16. 기타 참고사항

가. 자료의 출처 : 화학물질관리법 기존화학물질목록 및 원자재 MSDS 등
나. 최초 작성일자 : 2008. 08.07.
다. 개정횟수 및 최종 개정일자 : 8, 2024.03.19

책임의 한계

이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제공된 정보는 발표일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상의 지식과 정보 그리고 믿음에 기초할 때 정확합니다. 제공된 정보는 오직 안전한 취급, 사용, 처리, 보관, 운송, 폐기 및 배출을 위한 지침이며, 보증서나 품질 사양서로 간주되어서는 안됩니다. 이 정보는 오직 지정된 특정 물질에만 관련이 있으며, 이 문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한, 기타 물질과 혼합해서 사용하는 물질에 대해서는 유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